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
	배포일시	2018. 2. 8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 (법·제도)	담 당 자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조관우, 주무관 유병순 ·☎ (044) 201-3387, 3389
	주거재생과 (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)	담 당 자	·과장 소성환, 사무관 유지만, 주무관 이남일 ·☎ (044) 201-4941, 4942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9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!

소규모주택정비법 2.9. 시행…빈집 정보시스템 구축,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

□ 빈집이 밀집된 **인천시 남구**의 경우 앞으로 **빈집 실태조사**를 통해 **빈집정보시스템**을 **구축**하여 **체계적인 빈집 관리**가 **가능**해지며,

○ 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**자율주택정비사업**을 통해 **낡은 단독·다세대주택**을 자율적으로 **개량**할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「**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**」과 하위법령이 **2월 9일**부터 **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

○ 지속적으로 **증가**하고 있는 **빈집**에 **선제적**으로 **대응**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**실태조사**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바탕으로 **빈집정보시스템**을 구축할 수 있다.

○ 또한,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**철거 등 필요한 조치**를 명하거나 **빈집정비사업**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.

② **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**

○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,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**자율주택정비사업**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**처음**으로 **추진**된다.

- **이 사업**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**주민합의체**를 **구성**하면 조합 없이 **단독·다세대주택**을 **자율적**으로 **개량**할 수 있는 사업이다.

○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**가로주택정비사업**의 경우 그 동안 **일부**가 **도시계획도로**에 **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**이 가능했으나,

- 앞으로는 **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**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**가로구역**으로 **인정**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**확대**된다.

③ **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**

○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**지자체**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**비용**을 **보조 또는 융자**할 수 있으며, 높이제한, 공지기준, 조경기준 등의 **건축기준**을 최대 50%까지 **완화**할 수 있다.

○ 또한, 소규모정비를 통해 **연면적**의 **20%이상 공공임대** 또는 **공공지원임대주택을** 건설 시 **용적률**을 법적 상한까지 **완화**할 수 있다.

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, 기금융자 등 **공공지원 프로그램**도 **시작**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**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**, **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**, **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**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,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(2월 내 발표예정)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**노후·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**를 **확대**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조관우 사무관(☎ 044-201-3387), 주거재생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49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